

지난해 3월 남녀호봉차별 문제로 검찰에 고발됐던 연세대학교(총장 송자)가 지난 1월 19일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1백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차별임금사건으로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됐던 연세대는 그간 시정을 요구하는 여직원들의 요구를 집단이기주의로 몰며 문제 해결을 회피해 왔다. 검찰은 송치받은 후 7개월이 넘도록 '조사중'이라며 기소를 미루다 지난해

말에야 서부지원에 기소해 1월에 약식명령을 내림으로써 여직원들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리면서 "연대는 상시근로자 4백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여기서 근로하는 남자근로자와 여자근로자가 노동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

치가 인정되는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같은 직급에서의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63년 5월부터 90년 3월 사이에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는 여자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밝혔다.

연대는 93년 5월, 92년

은 △차별임금사건으로는 최초로 검찰에 고발돼 범죄사실을 인정받는 성과를 얻어냈고 △노동부의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며 △아직 동일노동·동일임금 판례가 없는 현실에서 약식명령이긴 하나 최초로 법원의 법해석이 내려

96.3.8

연대 임금차별사건 여직원 승소

동일노동·임금 관련 최초 법해석, 에너지공단도 고발

단체협약 중요사안이었던 군경력 소급인정을 시행하면서 기존의 남녀호봉차이(1-2호봉)를 군경력으로 인정하는 1차조치를 단행했으며, 10월에는 군경력 호봉을 재가산함으로써 남녀간 성차별 호봉체계를 도입해 여직원들의 반발을 사왔다.

법원의 약식명령과 관련해 한국여성민우회(대표 정강자)는 연대 임금차별사건

졌다는 점 등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 판결이라 평가했다.

한편 양천구 목동에 자리 잡고 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성)이 여직원 승진차별문제로 고발당해 공기업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다.

지난달 16일 에너지관리공단 여직원 황정미 씨 등 7명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

등추진본부(공동대표 정강자)는 에너지관리공단을 상대로 '여성에 대한 승진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근로기준법 제5조, 단체협약 제33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고발장을 접수시켰다.

고발장에 따르면 공단측은 지난 92년 서울지방노동

났다.

이후 공단 노동조합에서 또다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노동청은 전과 달리 7급에서 6급 또는 6급으로의 승진시 과거 5년간 승진평균년수가 2년5개월 이상으로 승진대상자가 승진최저소요기간(2년 또는 1년6개월)이 경과됐다 하여

승진되는 것이 아니므로 차별이라 볼 수 없다"며 1차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승진소요년

수가 경과한 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 △노동청의 통보 이후 공단이 여직원들의 상위직급 승진에 있어 승진자격시험을 채택할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에게 승진기회를 제한하려는 의도이자 차별적 처우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해 오다 고발하기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수가 경과한 자에게 승진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제외한 것은 차별적 처우이며 △노동청의 통보 이후 공단이 여직원들의 상위직급 승진에 있어 승진자격시험을 채택할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여성들에게 승진기회를 제한하려는 의도이자 차별적 처우라고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해 오다 고발하기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